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손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04

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 손명수 · 부승찬 · 한민수

김한규 · 남인순 · 정태호

김원이 • 이연희 • 문정복

이훈기 • 박 정 • 이건태

김현정 • 이기헌 • 박홍배

송기헌 · 김선민 의원

(179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,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.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,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시·도지사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, 주 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,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2조).

법률 제 호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"을 "시·도지사는"으로, "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"를 "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시·도지사는 재정 여건이나 주거복지 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·군·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3.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
-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시·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·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단서 중 "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제2항"을 "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제3항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제2항"을 "「주거기본법」 제22조제3항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2조(주거복지센터) ① <u>국가 및</u>	제22조(주거복지센터) ① <u>시·도</u>
<u>지방자치단체는</u> 다음 각 호의	<u>지사는</u>
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주거</u>	<u>시·도 및 시</u>
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. <단서	·군·구에 주거복지센터를 설
<u>신설></u>	<u>치·운영하여야 한다</u> . <u>다만, 시</u>
	・도지사는 재정 여건이나 주
	거복지 업무의 수요를 고려하
	여 둘 이상의 시・군・구를 통
	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
	설치・운영할 수 있다.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3.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
	가구의 발굴 및 지원
<u>3.</u> (생 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
<u> <신 설></u>	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
	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・운영
	하는 경우 시・도지사는 주거
	복지센터의 설치・운영에 필요
	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주거복
	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
	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공동
	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② (생략)	<u>③</u> (현행 제2항과 같음)

<신 설>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
산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
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
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
수 있다.